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지원사업

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

2021. 2.

환 경 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

목 차 :

1. 사업개요1
2. 지원대상 및 기준2
3. 보조금 예산의 교부5
4. 보조금 예산의 집행6
5.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9
6.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10
[관련 서식]
1.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12
2.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13
3.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14
4.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17
5. 보조금 지급 신청서18
6.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19
7. 보조사업 실적보고서20

1. 사업개요

가. 목적

○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상시관리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수질 자동측정기기(TMS)의 부착 확대 및 적정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나. 추진근거

- 「물환경보전법」제38조의2 제2항(측정기기의 부착 등)
 -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하는 자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'보조금법'이라 한다)」
-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(환경부훈령 제1323호, 2018.4.18.)

다. 기본방향

○ 중소기업에 대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집행·관리에 대한 일반사항은「보조금법」및 관련 지침을 따르되, 그 외 세부사항은 동 지침을 따름

라. 기관별 역할

- (환경부) 사업총괄, 예산편성, 보조금 교부 및 집행관리, 정산 등
- (지방자치단체) 예산 수요조사 및 신청,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, 보조금 사업의 추진사항 관리 및 실적보고, 정산자료 제출 등
- (한국환경공단)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및 정산의 지원 등 (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)

2. 지원대상 및 기준

가. 지원대상

- (사업장)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「물환경보전법」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(이하 '관제센터'라 한다)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
 -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한 사업장
- (측정기기) 「물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[별표 7]의 측정기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
 - 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제2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기기
 - 제4호 나목의 하수·폐수적산유량계(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하수·폐수의 유량 측정자료를 전송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)

나. 지원항목

- (설치비)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
 - 신규 부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측정항목이 변경되어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기기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 포함
 -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치일 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

- (유지관리비)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「물환경보전법」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연도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
 -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로 선 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

다. 보조금의 지원비율

○ (보조비율) 국비 40%, 지방비 20%, 자부담 40%

라. 보조금의 산정기준

○ 설치비

(단위: 천원)

ユョ	서 키치 모	지원	지원	금액	자부담
구분	설치항목	기준금액	국비(40%)	지방비(20%)	(40%)
	합계	200,000	80,000	40,000	80,000
	рН	6,130	2,452	1,226	2,452
ار ا	TOC	63,262	25,305	12,652	25,305
추정 기기	SS	12,123	4,849	2,425	4,849
	T-N	44,990	17,996	8,998	17,996
	T-P	43,012	17,205	8,602	17,205
H-N	자동시료 채취기	14,693	5,877	2,939	5,877
부대 시설	자료수집기 (Data Logger)	10,665	4,266	2,133	4,266
	유량계	5,125	2,050	1,025	2,050

- 주) 1. 보조금은 설치항목별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
 - 2.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임

○ 유지관리비

(단위 : 천원)

점검다		지원	지원	지원 금액			
항목	횟수	기준금액	국비(40%)	지방비(20%)	자부담(40%)		
SS, Ph,	월 1회	36,400	14,560	7,280	14,560		
TOC, T-P,	월 2회	40,970	16,388	8,194	16,388		
T-N	월 4회	51,640	20,656	10,328	20,656		
SS, Ph,	월 1회	37,658	15,063	7,532	15,063		
COD, T-P,	월 2회	42,230	16,892	8,446	16,892		
T-N	월 4회	52,897	21,159	10,579	21,159		
	월 1회	25,660	10,264	5,132	10,264		
SS, Ph, TOC, T-P	월 2회	29,075	11,630	5,815	11,630		
100, 1-1	월 4회	37,042	14,817	7,408	14,817		
CC PI	월 1회	26,920	10,768	5,384	10,768		
SS, Ph,	월 2회	30,335	12,134	6,067	12,134		
COD, 11	월 4회	38,300	15,320	7,660	15,320		
CC DL	월 1회	24,990	9,996	4,998	9,996		
SS, Ph, TOC, T-N	월 2회	28,405	11,362	5,681	11,362		
100, 110	월 4회	36,370	14,548	7,274	14,548		
CC DI	월 1회	26,248	10,499	5,250	10,499		
SS, Ph,	월 2회	29,663	11,865	5,933	11,865		
COD, TTV	월 4회	37,630	15,052	7,526	15,052		
	월 1회	14,250	5,700	2,850	5,700		
SS, Ph, TOC	월 2회	16,508	6,603	3,302	6,603		
	월 4회	21,775	8,710	4,355	8,710		
CC DL	월 1회	15,510	6,204	3,102	6,204		
SS, Ph, COD	월 2회	17,767	7,107	3,553	7,107		
	월 4회	23,033	9,213	4,607	9,213		
	월 1회	3,770	1,508	754	1,508		
SS, Ph	월 2회	4,753	1,901	951	1,901		
	월 4회	7,050	2,820	1,410	2,820		

- 주) 1. 상기 표의 유지관리비는 연간 상한액으로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
 - 2. 유지관리비는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 교체비, 정도검사비를 포함
 - 3. 상기 점검항목 조합 외의 항목 조합에 대해서는 유사한 항목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점검횟수가 월 3회인 경우는 월 2회 기준을 적용하며, 월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 4회의 기준을 적용
 - 4. 점검 횟수는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점검 횟수를,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「물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50제5호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점검·관리사항의 횟수를 기준으로 함
 - 5.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임

3. 보조금 예산의 교부

가. 집행계획 수립

○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자치단체의 장"이라 한다)은 관할지역의 대상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및 교 체설치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보조금 집행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
나. 보조금 교부신청

-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"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[제1호 서식]"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- 단, 지원물량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

다.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

○ 환경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"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[제2호 서식]"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

라.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

○ 환경부장관은 교부 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내용을 취소할 수 있음

4. 보조금 예산의 집행

가.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

-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자(이하 "지급대상자"라 한다)를 선정하기 위해 "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·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[제3호 서식]"를 접수받아 지급대상자를 선정
-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함
 - 지급대상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
 - 지급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함
 - ① 당해연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대상 사업장인 경우
 - ② 관련법 개정 등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
 - ③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 경과,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
 - ④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
 - 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13]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배출규모가 커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경우
- ※ 하나의 사업장이 배출시설의 방류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1개 방류구에 대해서만 설치·운영비용 지원
-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함
 -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

-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"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[제4호 서식]"를 지급 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함
 - 다만,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,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

나.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

- (사업의 착수)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당해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
 - 자치단체의 장은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
- (보조금 지급신청) 지급대상자는 "보조금 지급 신청서[제5호 서식]"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다음 구분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
 - (설치비) 측정기기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부착완료 신고를 하여 시·도시사등으로 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. 다만, 측정기기의 설치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설치공사 완료전에 보조금의 70% 이내의 범위에서 선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

- (유지관리비)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매 반기 마지막 월의 10일까지 해당 반기 또는 해당연도 분의 유지관리비를 신청. 이 경우 해당반기 또는 해당연도의 유지관리비는 시·도지사등 으로부터 측정기기 부착 적합통보를 받은 월의 익월부터 산정함
 - ex) 3월에 부착 적합통보를 받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5월에 선정된 경우의 운영관리비는 4월분부터 청구가 가능하며,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 6월10일 까지 3개월분(4~6월)을 신청하고 12월10일까지 6개월분(7~12월) 신청. 만일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2월10일까지 해당연도분(4~12월)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.

단, '20년 이전부터 측정기기부착대상에 해당하여 측정기기를 부착·운영 하고 있는 사업장은 1월분부터 청구 가능

- ※ 보조금 신청 반기의 마지막 월의 유지관리비는 지급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업자가 선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내역(청구서 또는 해당반기의 월평균 금액 등)으로 신청하고, 익월말까지 지급내역을 제출
- (보조금의 지급)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및 승인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
 - (설치비)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. 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비의 선금지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「국고금관리법」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조금의 70% 이내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
 - (유지관리비) 지급신청을 받은 월의 말일까지
- (사후 관리)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

다.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

-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,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
 -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 -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
- ③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(연장을 요청한 경우는 연장기간 추가)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
- ④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
- ⑤ 폐업, 부도,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
-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
- ※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부터 2년 간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
- ※ 지급대상자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함

5.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

가.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(보조금법 제25조)

- 자치단체의 장은 매 분기마다 지급대상자 확정내역, 사업장의 설치현황 및 보조금 지급실적 등 "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[제 6호 서식]"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-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, 보 조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

나. 보조사업의 실적보고(정산)(보조금법 제27조)

-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, 보조사업 폐지승인,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, 승인,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"보조사업 실적보고서[서식 7호]"를 제출하되, 회계연도 종료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
 -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고 시에는 집행확인에 필요한 자료(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, 지출결의서 사본 등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,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)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
- 환경부장관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법령의 규정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 조금의 최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

6.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

가. 재산처분의 제한(보조금법 제35조)

-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서 측정기기의 가동 여부 및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의 변경 사항 등을 확인·관리하여야 함
-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탈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반환토록 해야 함
 - 다만, 폐업, 부도, 파산, 사고, 화재, 도난, 천재지변, 수리가 불가한 고장 등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

나. 검사(보조금법 제36조)

-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자치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·확인할 수 있음
-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한지를 서류 검사 또는 현장 확인하여야 함

① 설치비

-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, 측정기기 종류 등이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한 측정기기 설치 여부

② 운영관리비

-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, 정기점검 주기 등이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및 관리대행 위탁대금 지급 증빙내역 확인(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
- 사업장 자체관리의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자 임명 서류(재직증명서 등) 및 업무분장 등 관련 증빙서류, 운영관리를 위한 점검내역, 소모품 관리 및 정도관리 등을 위해 지출한 증빙내역(세금계산서, 정도검사결과 등) 확인

[제1호 서식]

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							
시·도덕	년 8						
		신청	내역 (단위 : 천원)				
사업명			국고 신청 금액	지방비			
설치·운영 지원사업	섵]치비					
	운 0]관리비					
		국고 성 금액					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0 0 0 (관 인)

환경부장관 귀하

- ※ 첨부서류
- 사업 산출 근거 1부.
-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(별첨)

[제2호 서식]

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.

1. 보조사업 수행기관 :

2. 예산과목

○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·운영 지원사업 : (예산과목 코드 기입)

3.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

구분	사업비(천원)					
	합계	국비	지방비			
설치비						
운영관리비						
합계						

4. 교부조건

- 가.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
- 나.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보조 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
- 다.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,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 하여야 함
- 라. 국고보조금의 집행 시「예산회계특례법」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마. 기타 교부조건은 환경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음. 끝.

환 경 부 장 관

[제3호 서식]

수질자동측	정기기 설차운	영 지원	일사업	보조금	지급디	배상자 신청서
	□ 설치(□ 신]규 □ ፯	고체) / [] 운영관	L리비	
1. 신청인(사업-	주)					
상호(대표자)		()	사업자등	등록번호		-
주 소			전화	번호	()	-
업 종						
수질종별			중소기	업 여부		
2. 설치비 보조	금 신청 내역					
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명	모델명(제작사) (S/N)	구매가	격(원)	보조금 <i>(</i> (비고 (납품·설치 업체명)
рН						
SS						
TOC						
T-N						
T-P						
자동시료채취기						
자료수집기						
적산유량계						
합	계					
3. 운영관리비용	용 보조금 신청 1	내역				
측정기기 종류	운영관리 점검주기	운영관리	비용(원)		조금 7액(원)	비고 (운영관리 업체명)
위와 같이 수질	자동측정기기 설	치비 및	운영관리	비 보조	금을 신청]합니다.
						20
				신청인	!	(서명 또는 인)
	과할 형	했정	기과	·명 =	기 하	

※ 첨부서류

- 1. 중소기업 확인증(중소벤쳐기업부 발행)
- 2.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(회사명, 주소, 연락처, 담당자 등)
- 3.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
- 4.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(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)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(자체관리의 경우에 한함)
- 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
- 6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[제3-1호 서식]

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

「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·운영 지원」사업과 관련하여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 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

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, 동의 여부를 체크,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,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.
- 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[필수]

[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

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

[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]

·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, 보조금 집행·관리 등에 이용
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,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□ 동의	함
------	---

□ 동의하지 않음

2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[필수]

[위탁·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]

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

[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]

(제공) 환경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

[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]

· (환경부)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·관리 등에 이용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□ 동의함

□ 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본 "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"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2020년 월

일

성 명 : (인)

○ ○ 지자체장 귀중

[제3-2호 서식]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□ 목적

-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"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"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·활용
- 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 - ① (이력정보)신청일,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
 - ② (과세정보)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"매출액, 개업일, 휴업기간, 폐업일"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"수출액"에 한함
- 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 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- □ 동의 효력기간
 - ㅇ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.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
 - *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
 - *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 - ㅇ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
 - 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년월일기업명ㅇㅇㅇ (인)대표자ㅇㅇㅇ (인)

- 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- 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[제4호 서식]

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

관리번호	대표자	주민등록번호	
사업장명		업종	
소재지		전화번호	
공급사	숭인금액		(원)
유지관리사	숭인금액		(원)

귀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·운영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 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 니다. 아울러,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측정기기 탈거 시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유의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관할 행정기관명 (인)

[제5호 서식]

보조금 지급 신청서								
□ 설치비(□] 선금 🗌 :	완성금) /	□ 운	영관리비([] 상팀	반기 [] 하반	기)
신청인	성 명			주민등록병	번호			
(사업주)	주 소							
사업장	사업장명			전화번호	<u>5</u>			
정보	주소					1		
신청금액		(원)	승	-인금액			(원)	
	은행명							
입금 희망 은행	예금주							
	계좌번호							
「보조금 관	·리에 관하	 법률 ₋ 제1	 6조 등	및 동법 시	행령	제7조	 의 규 ⁷	정에
따라 위와 같						,,,,	, ,,	0 1
						년	월	일
		신청인		(인)		긴	包	芑
관할 행정기관 귀하								
w 7nl nl 2								

※ 구비서류

- 측정기기 설치 계약서 및 설치비 산출내역서
- 측정기기 설치완료 입증서류(부착완료 통보서, 사후제출 가능) 및 설치비 지출 증빙서류
-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유지관리비 지출 증빙서류(자체관리의 경우는 유지관리 실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증빙자료) * 유지관리비를 신청한 날이 속한 해당월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월의 유지관리비는 산출내역으로 신청하고 익월말까지 증빙자료 제출
-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사본 1부

[제6호 서식]

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

(20 . 분기)

- 1. 시·도명 :
- 2.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・운영관리 지원현황

2.42	(/ 4)분기	4)분기 지원현황			누적 지원현황			
지원 지원 항목 시설		지원 금액(원)			시설	설 지원 금액(원)			국비
3 7	(수)	합계	국비	지방비	(수)	합계	국비	지방비	잔액
합계									
설치비									
운영관리비									

3. 지원대상별 지원현황

지원	사업장명	측정기기 항목명	,	7) 7 () 7)		
항목			총액	국비	지방비	지급일자
	합계					
설치비						
	합계					
운영						
관리비						

[제7호 서식]

보조사업 실적보고서

사업명	보고기관	보고기준일
수질자동측정기기		
설치·운영 지원사업		

(담당 부서, 작성자, 전화번호)

1.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

(단위 : 원)

구분		총 예산	연도별 재원별 예산 내역				
			2021	2022	2023	2024	
합계							
국비							
	소계						
지방비	시·도비						
	시·군비						

2. 예산 집행실적

(단위 : 원)

		20 (현재 집행현황)						
구분		예산 (A)	전년도 이월액 (B)	예산현액 (C=A+B)	지출 원인 행위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합계								
국비								
	소계							
지방비	시·도비							
	시·군비							

\bigcirc	이원	및	집행잔액	발생	사유

_

_

_

※ '21년도 예산서 사본 및 지출원인 행위 근거 서류 첨부

3. 업체별 보조금 지급현황

,) 7 7	사업장명		-) 7 A) -)		
시·군·구		총액	지원내역(원) 국비	지방비	지급일자
	합계				
설치비					
े ठो	·계				
운영비					
함	·계				